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계정구분(안 제1조 ~ 제2조)
-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안 제3조 ~ 제6조)

- 기금운용심의(안 제7조)
- 회계공무원, 시행규칙, 존속기한 등(안 제8조 ~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등에 따라 회계와 기금 상호 간,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의 이전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 등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 규정이 불명확하여 예비비를 제한없이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있었음.
- 이를 보완하여 일반·특별회계의 예비비 한도를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하고,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20. 9. 10.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각 계정별 재원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과 이자율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는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

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위원회가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두었음.

○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가 있고, 용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각 회계별로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세수증가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4 호
----------	---------

제출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목적, 계정구분(안 제1조 ~ 제2조)
- 나.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안 제3조 ~ 제6조)
- 다. 기금운용심의(안 제7조)
- 라. 회계공무원, 시행규칙, 존속기한 등(안 제8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 2)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3) 행정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할 사항 없음

나. 입법예고(2020. 9. 3. ~ 9. 23.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구청장 추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3. 통합기금운용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